

보도시점 2026. 5. 31.(일) 12:00 / 배포 2026. 5. 29.(금) 08:30
<6. 1.(월) 조간>

‘귀한족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 납품 대가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개설한 가맹점 개수를
부풀려 광고한 ‘(주)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201백만 원) 부과 -

※ 주말 엠바고 주의 : 5월 31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족발·보쌈 등을 판매하는
가맹브랜드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주)귀한사람들*(이하 ‘귀한사람들’)이 ①납품
업체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②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장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0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25년 말 기준 매출액 약 175억 원, 가맹점 개수는 133개임

①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귀한사람들은 족발·보쌈 원육, 소스류 등의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 알선의 대가로 2020년도에 ○○ 등
9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총 141,145천 원을 정보공개서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도에 △△ 등 16개 업체로부터 총 613,015천 원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는데, 이 가운데 소스류 납품업체 △△로부터 해당 업체와의 연간
거래총액(792,105천 원)의 22%에 달하는 약 174,856천 원을 수취하고도 정보공개서에는
이보다 축소된 11%(약 87,131천 원)만 수취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거래 알선의 대가 관련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2023. 2. 6. 등록)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거래상대방	경제적 이익의 내용	연간 거래총액	비고
△△	거래액의 11%	792,105	2021년 기준
▲▲	거래액의 2.5%	117,695	2021년 기준
▽▽ 등 13개	거래액의 6.7%	5,930,000	2021년 기준
▼▼	거래액의 5.5%	590,014	2021년 기준

이러한 내용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2021.4.21.부터 2023.10.5.까지
기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는 총 97명에 달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어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은폐·축소한 것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20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 귀한사람들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창업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5~6월 오픈매장 16개”라는 내용의 가맹점 모집 광고를 진행하였다.

홈페이지 광고물



그러나 해당 기간에 실제 개설된 매장은 ‘역삼점’ 1곳뿐이었으며, 나머지 15개 중 7개 매장은 다른 기간에 개설되었고, 8개 매장은 2023년 12월까지 개설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동안 개설된 가맹점 정보는 해당 가맹사업의 성업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이므로, 이를 부풀려 광고한 것은 소비자(잠재적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사실을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물품 거래 알선 과정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한 행위와 사실과 달리 개설 가맹점 수를 알려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 가맹본부 일반현황 및 관련 법령 규정

담당 부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	책임자	과 장	김세겸 (02-2110-6167)
		담당자	조사관	손희완 (02-2110-6188)



참고 1	가맹본부 일반현황
-------------	------------------

□ 가맹본부명 : (주)귀한사람들

사업자등록일	가맹사업 현황		
	영업표지	가맹사업 개시일	업종
2019. 3. 13.	귀한족발	2019. 8월	족발전문점

* 출처 : (주)귀한사람들 정보공개서

□ 매출액 등 현황

(연도 말 기준, 단위: 천 원, 부가세 미포함, 개)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가맹점/직영점
2023	5,513,446	3,673,045	1,840,401	12,244,386	876,313	694,146	97/2
2024	7,052,269	4,415,700	2,636,569	19,310,898	773,049	796,167	148/2
2025	10,668,021	5,993,845	4,674,176	17,466,876	2,242,124	2,037,607	133/1

* 출처 : (주)귀한사람들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생략)
 -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 4. ~ 6. (생략)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 ① (생략)
-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2. ~ 3. (생략)

□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2. ~ 4. (생략)
- ② 제1항 각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 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 ② ~ ⑤ (생략)